

폐기물 재활용의 증진방안

정재춘 / 연세대학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실장

이 원고는 지난 3월 29일 14:00~17:00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식품공업협회·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 「포장용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토론회」(식·음료포장용기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편집자주

우선 토지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 있어야 수집과 중간 처리가 용이한데, 도심지 부근에서는 너무 땅값이 비싸서 토지를 구할 수 없고, 또 구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입지가 곤란하다. 특히 보관시설의 확보에 부지가 많이 소요되는데 넓은 바닥면적이 필요하고 보관품의 특성상 고충화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난점으로 되고 있다.

I. 서론

근래에 들어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0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 국가목표를 30%로 높게 잡아 놓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들의 발생, 수집, 재활용경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현행의 제도와 법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 제도상 폐기물의 재활용 증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활용 산업의 쇠퇴 이유

1) 토지확보의 어려움

2) 재정 확보의 어려움

대부분의 재활용업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들의 거의가 중소기업이고 담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다. 또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가격변동이 심하고 물량의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인력 확보의 어려움

재활용업체는 특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갈수록 사람들의 편의주의가 팽배하여 힘들고, 어려우며, 더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물상의 예를 들면 부부가 대개 1~2명의 종업

원을 데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건비의 상승 요인도 함께 작용하여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4) 기술개발의 기반취약

현재의 자원 재활용 산업은 과거와 같은 단순 기술만으로는 어렵고, 보다 진보된 고도의 복합기술을 요한다. 그런데 영세한 중소기업으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요구되는 이러한 기술개발에 투자할 자금과 여력이 거의 없는 것이다.

5) 소비자들의 낮은 선호도

재활용산업이 부진한 이유에는 소비자들의 낮은 선호도를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은 우선 현대사회의 풍부한 물질과 다양한 신제품에 오래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생 제품보다 값이 좀 비싸더라도 신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재생플라스틱 제품, 재생종이 제품, 재생 타이어 등의 수요가 부단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재생제품은 외견상으로 볼 때도 색깔과 질이 떨어지며 신선한 감이 없다. 또한 색상과 질뿐만 아니라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여 선택의 여지가 적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서는 판매의 확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III. 폐기물 재활용의 증진방안

1) 재활용 관계법규의 정비

(1) 타법령과의 조화

재활용촉진관계법규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새로 제정되는 관계법규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법규가

제정되더라도 수도권정비촉진법이나 공업입지법 등 타법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활용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도권정비촉진법과 공업입지법에 의하여 600평이상의 공장은 연못과 정원을 만들고 적당한 조경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대체로 공장 부지 면적의 20%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재활용업체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재활용업체들은 사실상 입지가 곤란하게 된다. 이들은 경영 및 기술면에서 낙후해 있고 자금도 영세하여 사업장을 고층화할 능력과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활용업체의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특례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2) 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의 개정

사회의 변동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제정되었던 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고물상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고물상의 개업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1년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의 업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다. 그런데 고물상이 아직도 경찰서장의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제시대의 규제중심 법규의 잔재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면세점이 3천6백만원이하인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적어도 현시대에 맞게 1억원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3) 법 제정시 충분한 유예기간의 설정 및 의견수렴

법의 제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기본 구상과 법조문의 작성이 모두 담당 관료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최종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비현실적인 법규의 제정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시행에 있어서 관계 업체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시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2) 현행 예치금, 부담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1) 예치금,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현행 예치금 및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누락 또는 제외품목으로 인한 형평성 또는 처리비용의 전가의 문제가 있다. (예 : 나무젓가락, 농약용기, 온도계·체온계, 타이어-농기계용, 자동차, 냉장고, 비닐봉투, 담배, 세제용기, 면도기, 칫솔, 페스트푸드용기·종이컵, 알미늄접시)

(나) 예치금 납부 주체의 한정으로 인한 정책효율의 저하

최종제품의 제조·판매자로 국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소재, 용기 제조업체의 관심 또는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없다.

(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 미흡
예치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LCA평가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현재까지도 감각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아직까지도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2) 예치금 효율의 적합성

예치금 제도는 사실상 해당(발생)기업으로 하여금 회수·처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이의 시행에 있어 주의할 점은 현재와 같이 재활용 여부와 환경적 오염을 고려치 않은 효율은 경제적 동기유발이 어렵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와 오염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

는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 한 예치금의 인상을 통하여는 재활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가) 효율기준 설정시 신빙성 있는 자료 이용 미흡

'92년도 대상품목 예치요율 산출자료 및 '95년 예치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인용된 기초자료를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일부분에 국한되며 처리 실적에 비하여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한국자원재상공사의 자료를 인용한 것은 객관성을 잃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효율기준 산출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

기준요율에 대한 정부, 해당기업, 사업자단체, 민간재활용업체의 견해와 시간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상당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조사와 설정을 유보하고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과 재조사가 필요하다면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동조사 또한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예치요율 인상은 재활용률 향상이라는 인식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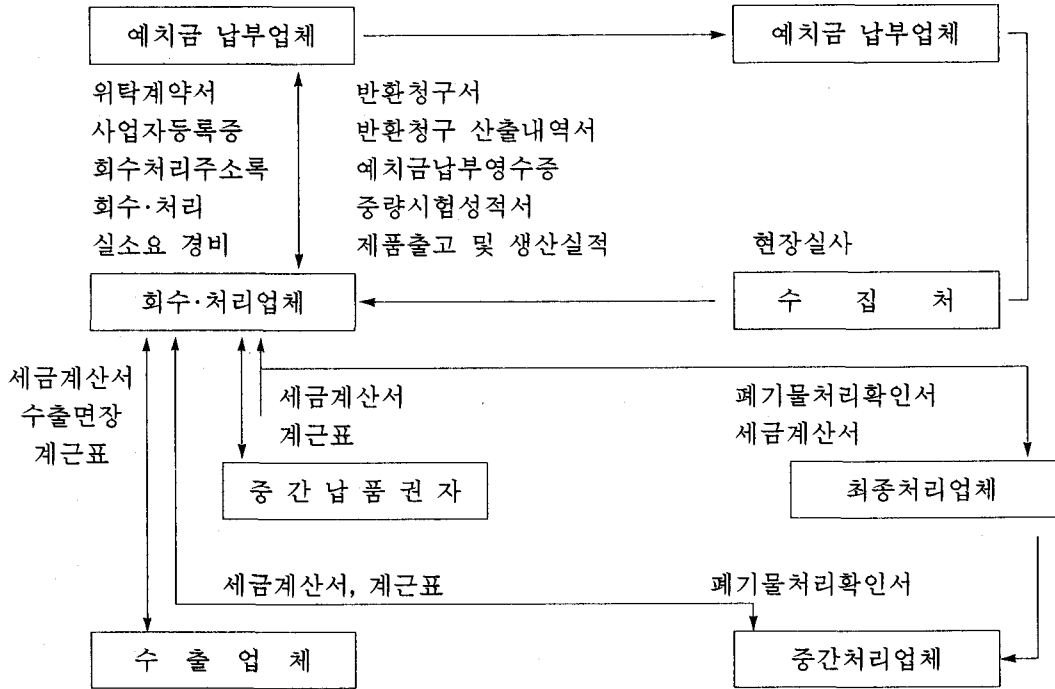
예치요율의 인상은 해당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하며 특히 불필요한 가격인상과 소비자 부담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나타나며 근본적인 재활용률 제고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중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93년 고시된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보완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래의 목적에 맞추어 처리비용의 부담에 국한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구속력을 상실(사실상 소비자전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처리 목표를 이행과 사업자단체 구성·운영, 재활용품 사용 의무율 등이 강력한 수단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예치금 반환 업무의 개선방향

(가) 현 예치금 반환업무



구 분	제출증빙 및 서류	비 고
1. 예치금반환 신청서	① 예치금반환청구서 ② 제품별 반환청구금액 산출내역서 ③ 반환기간 제품별 출고 및 생산실적 ④ 예치금납부영수증 사본 ⑤ 품목별공인기관 중량시험 성적서 ⑥ 회수처리대장 ㉠ 회수(수집)전표 ㉡ 회수처 주소록 ⑦ 폐기물처리확인서 ㉠ 계근증명서 ㉡ 세금계산서 ⑧ 회수·처리위탁계약서 사본 ㉠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수·처리실소요경비내역서	1. 관련법상 제출서류 ① 제품별 반환청구 금액 산출내역서 ② 예치금납부영수증 사본 ③ 회수·처리증빙 사본(제조, 수입업자) ④ 회수·처리위탁계약서 사본 및 회수처리 한 자의 회수처리의 증빙서류 사본 <문 제 점> ① 동일서류의 반복제출 ○ 공인기관 중량시험성적서 ○ 회수·처리위탁계약서 ② 중복성 제출서류 ○ 회수처리대장 ○ 수집전표 ○ 폐기물처리확인서 ○ 계근증명서 ○ 세금계산서 ③ 불필요 서류 ○ 회수·처리실소요경비내역서

구 분	제출증빙 및 서류	비 고
2. 반환실시 및 확정	① 제출서류검토 ② 현장실사 및 우편확인	① 우편물 확인의 문제 분실, 미도착 최초 수집자의 불편 최소 수집자의 주소변경 최소 수집자의 거부 등에 의한 미확인

(나) 예치금 반환업무의 개선방향

① 제출서류의 간소화

㉠ 동일서류의 반복제출 지양

동일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것을 간소화해야 한다. 다음의 서류들이 그 예가 된다.

- 공공기관 중량시험 성적서
- 회수·처리위탁계약서
- 위탁업체 사업자등록

∴ 따라서 내용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1회 제출로 가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중복성 제출지양

㉠ 수집전표

- 회수처리대상과 수집전표는 기재 내용이 동일하며 일선 회수처리업체의 영세성과 인적자원으로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매 회수시마다 수집전표를 2매 작성하여 회수자와 구매자가 각각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회수자가 보관치 않을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게 된다.

- 예치금 반환신청시에도 2매 복사하여 총 4매를 작성 또는 복사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과 종이의 낭비가 심하므로 자원절약에 배치되고 있다.

㉢ 계근증명서

현재 회수·처리 위탁업소의 최종처리 및 실거래 확인을 위하여

폐기물처리확인서
계근증명서
세금계산서

를 제출하고 있다.

∴ 폐기물처리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으므로 계근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할 것이다. 단, 폐기물처리확인서 발급요건의 강화 즉, 발급기관의 자격요건 및 발급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불필요한 서류

- 회수·처리소요경비내역서

∴ 현실적으로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예치금 반환액이 가감되지 않고 있으므로 불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선이 된다면 현재 제출서류 분량의 1/2이상이 감소될 것이며 반환 확인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회수·처리 확인방법

〈현 행〉

- 현지출장조사
 - 최초수집자의 우편확인
 - 제출서류 검토
- 를 병행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현지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인정되어 우편을 통한 확인작업은 불가피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운용상 문제가 있다.

- ① 우편물의 지연도착 및 미도착(분실)에 의한 확인 미비
- ② 최초 수집자의 주소이동(거래시점과 확인시점이 1.5개월~3.5개월임)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 ③ 최소 수집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우려한 확인 거부
- ④ 우편물 발송 및 확인서 작성 등이 불편하여 우편물 폐기(반환율이 60%) 등의 이유로 100%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우편 확인

된 부분만 반환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 ∴ 따라서 우편확인을 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처리확인서의 신뢰성 제고 및 발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을 전제로 할시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한 최초수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6) 한국자원재생공사 수집 물량에 관한 사항

- 회수·처리 위탁업체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한 경우 예치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회수비용만 제외하고 70% 정도는 반환해야 한다)
- 이는 관련법률에도 규정된 바 없으며 또한 시중의 최초 수집단가 보다도 고가에 구입하였으므로 자원재생공사라 하더라도 회수·처리위탁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최초수집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된 부분도 예치금 반환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사업자단체의 회수·처리

〈현 행〉

① 회수·처리한 폐기물량 및 반환금액의 산출방법

- $\frac{\text{회수처리기한 폐기물중량} \times \text{용량별 출고 비율}}{\text{폐기물 용량별 개당 중량}}$
=용량별 수량
- 용량별 수량 × 용량별 예치요율
=반환신청 금액

상기와 같이 계산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회원사의 출고실적을 취합하여야 하나 회원사의 수가 많고(30여개사) 품종수가 많아(약 100종) 실질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품목별 해당 사업자단체는 동종의 품목전체 예치금을 해당 폐기물총중량으로 계산하여 중량당 예치금을 산출한 후 관

할 수계환경청의 사전승인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때의 기초자료는 전년도 제품출고 실적보고서(익년 2월 20일 한 환경청 제출자료를 사용하며 이의 산출은 년 1회하여 1년간 사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중복서류

- 제조·판매, 수입업자의 위탁회수 처리의 경우와 동일함.

(7) 예치금 제도의 운영개선 방안

(가) 용어의 개념 정립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라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동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다. 따라서 회수·처리는 물론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의 개념이 부가된 환경친화적 의미가 포함되어 '96년부터 시행되는 예치금의 손비 인정에 맞추어 재정립 또는 조정되어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품목별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 현재는 재활용 실적 또는 노력에 관계없이 동일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없어 예치금을 기업의 부담금 즉, 준조세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업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동기부여, 예를 들면 체계적인 회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단체를 구성·운영하는 업체에는 그 실적을 평가하여 상응하는 배려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회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 (다) 예치금 제도의 효과 및 실적의 공개
 - 정기적으로 예치금 제도의 실시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공개하고 이를 통한 관련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재활용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교육 및 홍보정책
 - 경제적 유인정책인 예치금제도는 각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의 각종매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는 그 효과가 클 것이다.
- (마) 재활용품 통계의 정착화
 - 폐기물 발생량
 - 재활용품의 회수·처리 실적
 - 재활용품의 수요 파악
- (바) 재활용의 타당성 분석시급
 - 재활용의 사회적 비용
 - 재활용의 사회적 편익(최적 재활용률 설정)
 - 환경성 평가
 - 재활용 가능성

3) 재활용 업체의 육성정책 활성화

(1) 세제 및 금융지원

민간 재활용 업체를 육성하려면 국가가 이들 업체들에게 토지를 공급해 주고 각종 세제상의 특혜를 주어서 이를 키워야 한다. 이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상 감가상각비율을 높여 주어서(특별감가상각비율 적용) 세율을 낮춰 주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고정재산세의 감세조치, 특별보유토지세의 비과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집업이나 재활용을 업으로 하는 업체에게 부가가치세 대상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용자제도의 확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94년부터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문제와 자원절약의 2중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용자와 마찬가지로 용자액수와 용자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외 기업에서도 폐기물 재활용 산업에 까지 용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기금의 용자확대 방안을 제안하면 표와 같다.

폐기물관리기금 용자확대 방안(안)

구 분		재활용시설설치 지원사업	재활용기술개발 지원사업
금 액 (계 200억)		160억	40억
용 자 조 건	금 리	연 7%	(시설운전자금) 연 5%
	대출기간	3년거치 10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지원한도	소요자금의 80%(대기업 50%) 용자한도 10억	소요개발자금의 100%이하 용자한도 3억원이하
상 환 방 법		거치기한 경과후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기 타 사 항		전번과 동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후 2년이내에 용자규모를 200억원으로 2배 늘리면 그간의 용자지원 상황을 살펴 가면서 그 이후는 규모를 조정한다. 그러나 금리는 타환경관련

용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대로 시행하되 여건이 성숙되면 대체에너지 보급촉진 자금과 같이 재활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연 5%로, 재활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연

3%로 인하한다.

대출기간은 환경오염방지자금과 동일하게 3년거치 10년상환으로 조절토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융자한도액인데 재활용산업의 기술이나 설치가 점점 선진화, 자동화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비나 연구개발비가 상승되는 추세이므로 재활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80%이내, 대기업의 경우 50%범위에서 융자한도액을 10억원으로 늘리고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에 한하며 소요자금의 100%내 3억원 범위에서 융자해 주도록 한다.

이 액수의 최종결정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므로 융자신청 상황을 보아 탄력성 있게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활용산업이 확장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기금으로는 태부족하므로 환경오염방지금 등 다른 영역에서의 융자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아야 하겠다.

재활용산업의 지출경비중 상당한 부분이 원료와 시설로부터 야기된다. 특히 재활용재료는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자료(세금계산서)를 얻기가 곤란하며 재활용형·순환형 사회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국가 중요 명제로 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재활용산업용 주요기계류의 관세감면범위도 전체 영역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99조제7항에 재활용산업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재활용폐자원 수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시행령(그 범위)에는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등으로 한다.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세감면범위를 현행 관세법 제28조6에서 분쇄기 등 34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액의 80%로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관세액의 50%로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이 가능한 품목

은 국내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외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등록세 면제 등), 제114조(취득세의 면제 등)를 개정하여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밖에도 재활용 업체에 대하여 부가세와 법인세의 면제 또는 경감, 부동산양도세, 부동산임대소득세의 면제조치 등의 특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부지확보난의 해소

재활용산업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애로는 재활용산업용 부지의 확보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인구과밀지역에 대하여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7월 시행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이 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근본정신인 공장설립에 있어 토지이용 완화조치는 근본적으로 좋다고 본다. 그런데 재활용산업 육성정책이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5]도 시행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중분류 37(재생재료 가공처리업)과 이에 해당하는 세분류를 완전히 제외하여 도시형 업종으로 인정할 것.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개정하여 37(재생재료 가공처리 및 재생제품 제조업)로 할 경우에는 재생제품 제조업의 경우는 도시형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한다.
- ②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7조 2 관련 [별표 3]의 현지 근린공장의 범위 가운데 [시행규칙 별표 2]의 자원재활용업종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재생재료 가공처리업)를 중분류 37(재생재료 가공처리 및 재생제품 제조업)로 개정(표3 참조)

하고 더불어 이 모두를 현지 근린공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동력 확보안의 해소

재생산업체는 철강산업과 일부 제지업 및 유리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숫자로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먼지, 소음, 냄새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3D업종이다. 특히 비철금속, 플라스틱 재생업의 경우 아주 영세하다.

이러한 작업조건에서는 기존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확보가 곤란하다. 또한 점점 고임금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는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현상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업자체의 존폐에 위협을 주게 될 것이다.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불법체류한 근로자 덕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에서 '94년부터 1차로 2만명을 그리고 추가로 2~3만명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나 전반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가 없다. 외국인 연수자에 대하여 1인당 월 급여는 180,000원이다.

그러나 그 절차비용이 1,415천원(이행보증금 30만원, 추천수수료 275천원, 비행기티켓 60만원)으로 1년간 고용할 경우 월 120천원이상이 소요되므로 1년간만 고용할 경우에는 연수비를 합하여 월 30만원이상이 소모되는 편이므로 큰 덕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재활용산업 범위개정(안)

구 분	원 안	개 정
중분류 37		재생재료 가공처리 및 재생제품 제조업
371		
3710		
37101		
37102		
372		
3720		
37201		
37202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209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금속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3		금속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30		고철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301		비철금속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302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	비금속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4		비금속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40		섬유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401		폐지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402		폐플라스틱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403		재생연료 제조업(삽입)
37404		건설용 골재 재생제품 제조업(삽입)
374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금속(삽입)
37409		재생제품 제조업

겨우 2년차에 들어가서야 기술도 익숙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2년에서 끝나게 되면 겨우 익숙해지면서 그만두어야 될 형편이고, 또 신규로 받아들일 경우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비용중 이행보증금이나 추천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이를 최소한 1년 더 연장하여 3년 정도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기계화·자동화를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보조금제도의 실시

국가에서 재활용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네덜란드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업체들에게는 시정부에서 kg 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비축을 위한 창고의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르웨이의 환경부도 각 시로 하여금 폐기물수거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폐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직접적인 보조금제도 보다는 재활용업체의 결손부분을 정부에서 보충해 주거나 장비를 무상대여해 주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쓰고 있다.

(5) 시장안정재고 제도

시장안정재고제도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비수기(또는 초과공급시)에 저장해 두었다가 성수기(또는 공급부족시)에 적정가격으로 방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히 1974년 이후 일본에서 폐지재활용업체들이 고용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폐지재생업체가 아니라 제지업체들을 상대로 실시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이와는 약간 달리 평균 폐지 재고량을 초과하는 재고비축량에 대해서는 업체에게 재고유지를 위한 대여금을 무이자로 제공해 준다. 또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완충

기금제도란 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 성수기에 재활용업체들이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하고 이를 비수기에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폐지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시장의 활성화

(1)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각종 공공기관에서 쓰레기의 감량화를 추진하고 각종 물품의 재이용률을 높이는 한편(이면지 복사 등) 재생제품을 어느 정도의 목표비율까지는 우선구매하도록 해야 하며(예컨대, 전체 소비량의 30%까지로 정했다면 이 부분을 우선 재생제품으로 구매한다) 점차 재생제품의 이용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것은 재생제품의 판로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술선수범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다.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재활용품목의 종류로는 재생용지, 각종 사무용품, 차량용품(재생윤활유 등)이 될 것이다.

각급 공공기관은 이러한 제품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매점에 재활용제품의 판매코너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홍보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의 행정기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반관반민의 공사, 각급 교육기관과 민간회사들에게까지 확산시키면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행정지도와 권고사항으로써 시작한 다음 차츰 법적 규제의 차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2) 재생제품의 품질 및 규격기준 설정

재생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재생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생제품의 품질 및 규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품질과 규격이 균일한 재생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초가 확립될 것이다. 정부는

'92년 10월에 재생화장지 등 6개 품목에 대해 KS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재생고무와 재생타이어에 대한 KS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기준들을 좀 더 확충하여 보다 다양한 제품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민간부문의 재활용제품 사용확대 촉진

민간부문의 재활용제품 사용확대도 역시 조직화된 집단에 대한 권고와 행정지도 내지는 협조사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가장 잘 조직화 되어 있는 카톨릭,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와 각종 민간단체들에게 행정권고 및 협조사항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를 촉구하고 재활용제품 구입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게도 재활용제품을 일정비율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좀더 조직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에서 각종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 민간단체의 지도자들과 장기적으로 재활용증진에 대한 간담회를 거쳐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내에 재활용에 관한 자생적 조직이 결성되어 여기에서 자치적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 재활용 증진에 관한 조직내 실천방향을 기획하고 실행·평가하여 계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직이 공식적인 기구로 결성된다면 더욱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4) 재활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재활용폐기물의 수집, 가공, 재생 및 판매를 돕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재활용폐기물 및 재활용제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및 희망자에게 제공해 주는 재활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

지만 각종 종교단체, 환경단체 또는 민간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백화점, 대형상가 등에서 재활용품 코너 설치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상점에 의무적으로 재활용품 코너를 설치하고 판매촉진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정기적인 구내방송을 통하여 관측활동을 꾀며, 재활용품을 일부 사은증정품으로 주어서 널리 선전하도록 한다.

(6) 자원재생공사의 역할 재정립

앞으로 자원재생공사는 많은 부분을 민영화하여 경영효율을 증진시키야 할 것이다. 자원재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예컨대 폐합성수지 재생공장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업체와 합자하여 공동운영하고 민간업체가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한 후 최종 운영권은 이들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성이 있는 품목(예: 폐지, 캔)은 하루속히 민간에게 이관시켜야 한다.

(7) 폐기물 품목별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폐기물의 품목별로 회수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의 재활용을 품목별 사업자단체에 맡기며 예치금도 이 곳에서 관할하게 한다.

(8) 국민에의 홍보강화

텔레비전과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터미널 등의 공공장소, 식당, 서점 등의 장소에서 재활용제품의 구입을 권장하도록 정기적으로 홍보방송 실시를 유도한다.

참 고 문 헌

1. 도갑수, 1995, 폐기물자원화 현황과 대책, 첨단환경기술 1995년 2월호, p. 14~31
2. 정재춘외 3인, 1995, 가정쓰레기 이야기, 신광문화사
3. 정재춘, 1994, 폐기물처리, 신광문화사